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10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5. 30.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만으로는 융합적 기술투자·개발, 연구현장 근로환경 개선, 고등교육 R&D 연계 강화와 같은 산업·인력·지역혁신 등의 범부처적 과학기술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역대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 및 제2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이라 함)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u> , <u>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u>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 ----- ----- <u>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u> , <u>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u>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u> ----- -----.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u>2명</u>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u>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u>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제19조(부총리) ① ----- ----- ----- <u>3명</u>-----. ② (현행과 같음) ③ ----- <u>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u>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 ----- <u>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u>----

현행	개정안
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¹⁾를 맞이하면서 과학기술은 일상생활에서 과거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²⁾.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여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고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함에 따라³⁾,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의 전 부처와 관련된 정책 영역에

1) 제4차 산업혁명 :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2) 신용현, 제19회 KASSE 포럼(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주제 발표 요약, 시니어과협매거진 제7권 제4호,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2023, p.18. 참고

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해당하며,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수립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⁴⁾.

과학기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과 관련된 현행 기구와 역할을 살펴보면, 과기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⁵⁾⁶⁾,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4) 임형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의 역할과 실패 비즈니스”, 한국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경인행정학회, 2017, p.10. 참고

5)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6)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6. (생략)

④~⑧ (생략)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생략)

③~⑤ (생략)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⑦ (생략)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⁷⁾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혁신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⑧ (생략)
- 7)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차.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 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범부처 협력과제·중장기이슈 발굴 및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음⁹⁾.

현행 체계에 대하여,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과기부장관을 부총리로 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위상 및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¹⁰⁾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입법에 반영하여 과기부장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총괄·조정 대상을 현행 ‘과학기술정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동향 점검 및 정책 발전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혁신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과제 및 중장기 이슈 발굴과 관련한 사항
 3.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안전 및 보고사항
- 10) “과학기술계 ”차기 정부, 과학기술 부총리 부활해야 - 과학기술계 13개 단체 대선후보에 촉구하는 성명서“, 조선일보, 2022.1.9., “과기부총리제 필요, 과학·ICT는 함께 가야...각계 전문가 한 목소리”, 전자신문, 2022.3.27., “과기부총리 부활시켜...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 대응해야 - [인터뷰]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이데일리, 2022.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야 - [인터뷰]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IT DAILY, 2022.6.1. 참고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하여, 동 기구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설치·운영¹¹⁾하고 있는 기구로, 국무총리를 의장¹²⁾으로 하고 있어 부총리보다 상위 단계의 조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과기부장관을 부의장으로 하여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과기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과기부장관의 과학기술 분야 총괄·조정 기능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일정 부분 연계되는 측면도 있어 보임.

둘째, 일부 부처에서는 부총리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고(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체계에서도 과학 기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효율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산업통상자원부)

1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훈령 제391호, 2018.10.5. 제정 및 시행)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의장 및 부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고 있는바, 현행 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각계의 의견수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04년 9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를 신설하여 운영¹³⁾하였으나 2008년 2월에 폐지된 바 있어, 부총리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과 과거 운영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기능의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조직 개편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 중으로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경우 업무 중복의 우려가 있고, 현행 체계에서도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기능과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바¹⁴⁾, 별도의 부총리 신설은 조직

13) 「정부조직법」(법률 제7217호, 2004.9.23. 일부개정 및 시행) 제19조의2(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3인을 둔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14)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②·③ (생략)

효율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233만원
(연 평균 647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하였음¹⁵⁾.

문 의 처

02)6788-5339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010호) 비용추계서(요약), 국회예산정책처(2024.6.)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 간 총 3,233만원, 연평균 647만원

○ 본 추계 결과는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지급 수당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2025~2029년

(단위: 천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보수 상승	5,494	5,598	5,704	5,812	5,922	28,530
기관부담금 추가	720	739	759	779	799	3,796
합계	6,214	6,337	6,463	6,591	6,721	32,326